

‘유고결석 인정 신청’ 발급 안내

1. 유고결석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기한

가. 관련 규정(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유고결석)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 시 사유발생 1주 이내에 교학팀을 경유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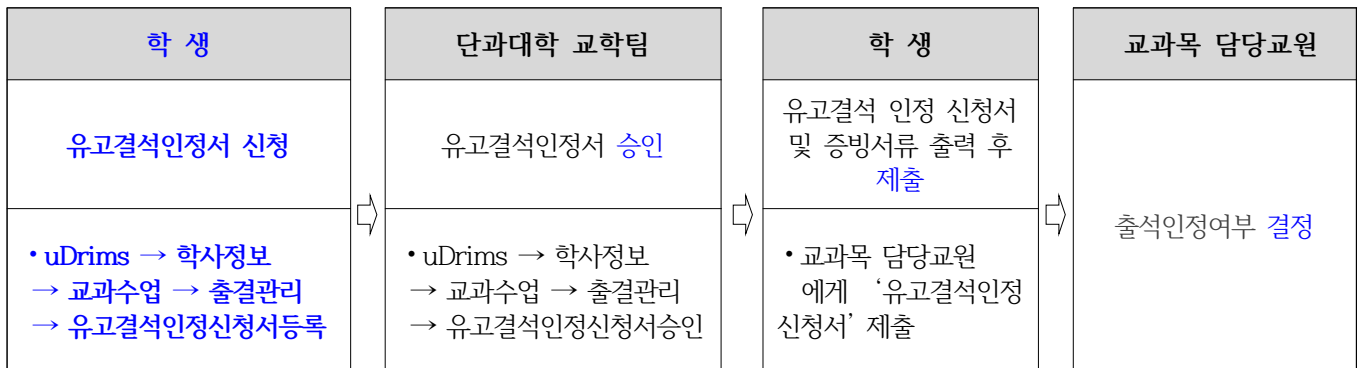
나. 현행: 1주 이내 제출하도록 안내되어 있지만, 사실상 종강 시까지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을 허용하고 있음

다. 변경(안)

- 2주 이내 제출하도록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을 연장
- 2주 초과 시 승인 불가함이 원칙
- 부득이함이 판단될 경우 A4 1장 분량의 학생의 사유서를 제출 받아 심사 후 승인

2.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1. 신청 대상: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유고결석) 유고결석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신청 기간: **유고결석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승인받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교원에게 제출
3. 신청 방법



3. 사유별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

유고결석사유	구분	인정 가능 기준	증빙서류	결석 허용 한계
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혼인	• 본인의 혼인	혼인신고서 또는 결혼청첩장	혼인일로부터 7일 (공휴일 포함)
	사망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자녀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일로부터 7일 (공휴일 포함)
2.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사망	• 부모의 형제/자매/남매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일로부터 3일 (공휴일 포함)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병원 치료	•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골절, 화상, 자상 등 응급치료) 및 사고치료 • [추가]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통원치료 ※ 단순 진료(감기 등) 및 안정 가료 등은 인정 불가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 입원일 경우 '입원 기간' 명시 - 수술의 경우 '수술' 표시 필요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연속 기간 기준 최대 2주 이내)
	전염병 환자	•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 환자의 경우 입원하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함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격리 권고" 및 "격리 권고 기간"이 기재되어야 함)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징병검사	• 소집에 의한 검사뿐만 아니라 본인이 검사일자를 지정한 경우도 인정함 • 현역병 모집지원에 따른 면접 참가도 인정	• 징병검사 시행일이 기재된 소집통지서, 참석확인서 등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예비군훈련	• 예비군 훈련일에 한해 인정함	• 예비군훈련 소집필증	
	전역 전 군복학생	• 전역예정자로서 수업결손이 4주를 초과하지 않는 군복학생	• 전역예정증명서와 함께 부대에서 발급한 휴가 예정일이 명시된 휴가예정서(가칭)	개강 이후 휴가일을 제외한 부대 근무일자 혹은 기간
5.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 여행, 야외실습 참가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 교육실습, 학과 학술여행 참여 등 학교에서 인정하는 자격 취득이나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인정	• 해당부서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부서장 직인이 날인된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또는 명단이 첨부된 공문)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6.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 또는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지자체주관 행사 참여 등)이 있어 이에 응한 경우 인정함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공문서)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7.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 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학교 단위의 업무	• 학교의 대표로써 대내외 행사, 연수, 훈련, 시합 등에 참가한 경우 인정함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학교 단위이므로 단과대학 및 학과(부) 단위의 업무는 인정되지 않음)

유고결석사유	구분	인정 가능 기준	증빙서류	결석 허용 한계
8.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교내 행사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에 한해 인정함 (총장이 승인하는 행사 범위 : 4.19등반대회 등) 단과대학 체육대회는 출전 선수만 인정, 학과 체육대회는 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부서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부서장 직인이 날인된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또는 명단이 첨부된 공문)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9.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재, 수재, 기타 천재지변 등의 경우 출석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사진촬영 등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함 	이재일로부터 5일
	취업을 위한 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을 위한 면접의 경우 면접 당일에 한해 인정함 아르바이트, 인턴 및 서포터즈 등을 위한 면접인 경우 인정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을 위한 면접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면접참석 확인증 등 면접 응시 기관 정보, 면접 일정 및 학생 본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해당일
	[추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출장(수도권 당일출장 제외) 및 해외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장명령문서 또는 출장결과보고문서, 교통비 영수증 또는 항공기탑승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하여 최대 3주 (야근 등의 근무는 인정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진에 따른 연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경력)증명서(승진내용기재), 승진·연수교육 문서, 참석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훈련 명령문서, 참석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직 및 교대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명령문서 			

■ 대표적인 유고결석 “불인정” 사례

1. 개별 동아리의 연습, 공연, 시합 등은 인정되지 않음
2. 가족의 병고, 가사 사정, 개인사정은 등은 인정되지 않음
3. 당일 치료(감기몸살, 인후두염, 위염, 장염 등)는 인정되지 않음
4. 단과대학 및 학과(부) 단위의 공연(특정학과의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공연은 인정함), 학과 MT 등은 인정되지 않음
5. 일반적인 교통편의 연착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6.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닌 학생이 취업 후 교육프로그램 참가

4. 등록 및 출력방법(학생)

uDrims → 학사정보 → 출결관리 → 유고결석인정신청서등록

유고결석인정신청서등록

년도: 2018 학기: 1학기 학년/성명: 2018

등록방법: 조회버튼 클릭 → 추가버튼 클릭 → 내용입력 → 저장버튼 클릭
 신청절차: 유드림스에 입력 → 교학팀 서류확인 및 승인 → 신청서출력 → 교과목 담당교원에 제출(강좌담당교원 재택으로 유고결석 (1) (4) (부 결정) (2) (6) (신청서출력) (3) (조회) (5) (추가) (삭제) (저장))

학번	2016	성명	학년/가진급학년
대학		학부(과)	주전공
입학년도	2016	학생구분	학생
교과과정년도	2016	학적상태	재학
이수학기수		등록학기수	
최종등록일자		도서대출유무	N
		교직유무	N
		학위과정	학사과정

년도	학기	결석신청시작일자	결석신청종료일자	유고결석사유	진행상태	첨부	등록일자
2018	1학기	2018-03-12	2018-03-12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통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신청		

[건수:1]

상세내용

유고결석신청기간: 2018-03-12 ~ 2018-03-12 (예) 2018-02-14 ~ 2018-02-14, 2018-01-01 ~ 2018-01-08
 유고결석사유: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통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첨부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유고결석사유	결석허용한계
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당일부터 7일(공휴일 포함)
2.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당일부터 3일(공휴일 포함)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통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2주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징병검사일 및 해당기간
5.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야외실습 참가	해당기간
6.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해당기간
7.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기간
8. 출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기간
9.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해당기간

1. 유고결석 신청방법

①조회 → ②추가 → ③유고결석신청기간 입력 → ④유고결석사유 선택 → ⑤증빙서류 업로드 → ⑥저장

2. 유고결석 신청서출력

①진행상태: '승인' 확인 → ②신청서출력 → 담당교원에게 제출

■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와 uDrims 등록 시 첨부한 증빙서류를 출력하여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대 학	대학	학 과 (학부/전공)	
학 번		성 명	
결석신청기간	2018. .28 ~ 2018. .28		
유고결석사유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위와 같이 서류가 제출되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2018년 02월 26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flex-end;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대 학  </div>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 margin-top: 20px;">본 교과목 담당교원 귀하</p> <p style="font-size: 0.8em; margin-top: 10px;">* 유고결석 관련 증빙서류는 본인이 출력하여 반드시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관련 규정

-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유고결석)
학생이 제출한 신청서(증빙서류 포함)를 근거로 출석으로 인정 가능

유고 결석 사유	결석허용한계
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의 결혼	당일부터 7일(공휴일 포함)
2.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당일부터 3일(공휴일 포함)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2주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징병검사일 및 해당기간
5.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야외실습 참가	해당기간
6.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해당기간
7.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기간
8.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기간
9.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해당기간